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안 번호	984
----------	-----

제안연월일 : 2013. 9. 30.
제안자 : 각 상임위원장

□ 감사개요

-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2조
- 감사시기 :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기간 : '13. 11. 13(수) ~ 11. 26(화) <14일간>
- 감사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
- 감사반 : 6개반, 47명
- 대상사무 : 고유 및 위임사무 전반
- 대상기관 : 총 107개 기관(실·국, 출자·출연기관 포함)
-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 총 421명(실·국장 등)
 - ※ 서류제출·출석요구 불응,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 ⇒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 : 총 1,154건(의정활동 홍보실적 등)

□ 향후계획

- 요구자료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취합 : 10.31(목)까지
- 행정사무감사 실시 : 11. 13(수)부터 14일간
-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의결 및 제출 : 11. 29(금)까지
-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 12. 16(월)
-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집행기관 이송 : 12. 17(화)까지
- 과태료 부과대상자 통보 및 위증자 고발 : 12. 31(화)까지
 - ※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2014년 1~2월중), 처리결과 보고(11월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인천광역시의회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목 차

1. 감사근거	1
2. 감사개요	2
3. 위원회별 감사반 구성	3
4.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4
□ 대상기관	4
□ 감사일정	5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8
6. 주요감사사항 및 감사방법	8
7. 진행순서 및 유의사항	10
8. 행정사항	11

【부록】 소관 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 요구,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서 포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 11월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 201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며,
-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
-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제외
- 위증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증인출석 거부, 선서·증언 거부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구성 가능
-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
-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 실시

2. 감사개요

- 감사시기 :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기간 : 2013. 11. 13.(수) ~ 11. 26.(화) <14일간>
- 감사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
- 감사위원 :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대상사무
 - 자치(고유)사무 전반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
 -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 전반
 -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제외)

※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대상이 되며, 지난해 감사한 사항도 또다시 감사대상이 됨.
다만, 감사계획서에 특정기간 내에 처리한 사무로 한정할 수도 있음.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례 제5조
 - 당연감사 대상기관
 - 시와 교육청
 - 시 소속 행정기관,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
 -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함)

3. 위원회별 감사반 구성

□ 감사반 : 6개 반(47명)

구분 \ 위원회	의회운영	기획행정	문화복지	산 업	건설교통	교 육
계	11명	7명	8명	7명	7명	7명
위원장	구재용	이용범	박승희	허인환	이도형	김영태
부위원장	이한구	차준택	신현환	이한구	이재병	허회숙
	신현환	최용덕	강병수	윤재상	정수영	노현경
위원	강병수	류수용	김기홍	김영분	김병철	구재용
	노현경	이강호	박순남	김정현	이재호	권용오
	윤재상	이상철	신동수	안병배	전용철	배상만
	이재병	홍성욱	안영수	조영홍	전원기	이수영
	정수영		제갈원영			
	차준택					
	최용덕					
	허회숙					

4.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 대상기관 : 107개 기관 <당연 91, 본회의 승인대상 16개 기관>

대상기관 위원회	위원회 선정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15개 출자·출연기관 및 1개 위탁사무 처리기관 포함)	기관수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1
기획행정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 포함), 안전행정국, 소방안전본부(8개 소방서, 소방안전학교 포함), 인재개발원, (재)인천발전연구원,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22
문화복지	국제경기지원관실,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포함), 문화관광체육국(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포함),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인천도시공사(관광사업본부),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의료원, 인천문화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사)인천도서관협회	20
산업	경제수도추진본부(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함), 환경녹지국(동부공원사업소, 서부공원사업소, 북부공원사업소 포함), 향만공항해양국(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 포함),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11개 사업소 포함), 농업기술센터, 인천환경공단, (재)인천테크노파크,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유시티(주)	32
건설교통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관광사업본부 제외), 인천교통공사	7
교육	시교육청(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 공보담당관실,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지역교육지원청(남부북부동부서부강화교육지원청),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공공도서관(북구·중앙도서관·부평·주안·화도진·서구·계양·연수도서관)	25

※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16개 기관

대상기관 위원회	출자·출연기관(15)	위탁사무 처리기관(1)	기관수
의회운영	-	-	-
기획행정	(재)인천발전연구원,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	3
문화복지	인천의료원, 인천문화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사)인천도서관협회	6
산업	(재)인천테크노파크,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유시티(주)	-	7
건설교통	-	-	-
교육	-	-	-

□ 감사일정 : 14일간 <휴일 4일 포함>

일자	위원회별 대상기관		기관수
11.13.(수) 10:00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1
11.14.(목) 10:00	기획행정	대변인실, 감사관실	2
	문화복지	인천도시공사(관광사업본부), 인천문화재단	2
	산업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관련사업소(2개소)	3
	건설교통	도시디자인추진단	1
	교육	공공도서관(8개기관), 직속기관(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사업소(학생교육문화회관,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14

일 자	위 원 회 별 대 상 기 관		기관수
11.15.(금) 10:00	기획행정	안전행정국	1
	문화복지	보건복지국	1
	산 업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3개소)	4
	건설교통	건설교통국, 인천교통공사 <현지확인>	-
	교 육	지역교육청(서부교육지원청)	1
11.16.(토)	휴 일		-
11.17.(일)	”		-
11.18.(월) 10:00	기획행정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 포함), 소통기획관실	3
	문화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시설관리공단	2
	산 업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사업소(2개소), 농업기술센터	4
	건설교통	건설교통국, 인천교통공사	2
	교 육	지역교육청(강화교육지원청), 학생교육원	2
11.19.(화) 10:00	기획행정	소방안전본부(8개 소방서, 소방안전학교 포함)	10
	문화복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국제경기지원관실	2
	산 업	경제자유구역청	1
	건설교통	도시계획국, 인천도시공사 <현지확인>	-
	교 육	지역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	1
11.20.(수) 10:00	기획행정	<행감자료수집>	-
	문화복지	인천의료원, 인천의료관광재단	2
	산 업	경제자유구역청(계속),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인천유시티(주)	2
	건설교통	도시계획국, 인천도시공사	2
	교 육	지역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	1

일 자	위 원 회 별 대 상 기 관		기관수
11.21.(목) 10:00	기획행정	인재개발원, (재)인천발전연구원	2
	문화복지	문화관광체육국, 관련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 등	1
	산 업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11개소)	12
	건설교통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현지확인>	-
	교 육	지역교육청(북부교육지원청)	1
11.22.(금) 10:00	기획행정	교육기획관실, 인천인재육성재단	2
	문화복지	문화관광체육국(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 박물관, 인천도서관협회, 강화고려역사재단)	5
	산 업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환경공단	2
	건설교통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2
	교 육	<행감자료수집>	-
11.23.(토)	휴 일		-
11.24.(일)	”		-
11.25.(월) 10:00	기획행정	국제협력관실, 인천국제교류재단	2
	문화복지	여성가족국, 관련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	1
	산 업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2
	건설교통	<행감결과정리>	-
	교 육	시교육청(교육정책국, 정책기획관실)	2
11.26.(화) 10:00	기획행정	<행감결과정리>	-
	문화복지	여성가족국(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인천 여성가족재단)	4
	산 업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2
	건설교통	<행감결과정리>	-
	교 육	시교육청(행정관리국, 감사관실, 공보담당관실)	3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총 421명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장 외 9명
-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관리실장, 안전행정국장 등 52명
- 문화복지위원회 :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등 79명
- 산업위원회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환경녹지국장 등 123명
-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등 50명
- 교육위원회 :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등 107명

6. 주요감사사항 및 감사방법

□ 주요감사사항

-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 산하기관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주요사업 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 주요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 개선실적
- 기타 현안문제 등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감사방법

-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소관 직무) 범위 내에서 실시

- 감사활동이지만 회의형식으로 진행
 - 통상적인 위원회 회의와 명백히 구분하여 운영
 - 회의 차수 미부여(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닌 감사위원회 활동)
 - 필요시 감사를 중지하거나 속개할 수 있음(정회와 반드시 구분)
 -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 감사는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되, 문제점이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중점을 두도록 함
-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적용
-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 등 출석요구 (시행령 §43, 조례 §10)
 -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시행령 §44, 조례 §12)
 - 과태료 부과 (조례 §17)
 - 허위증언자 고발 (조례 §18)
- 추가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늦어도 3일전까지 통보(시행령 §43①, 조례 §10)
-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

위 반 행 위 별	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 거부	100만원 이하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함

7. 진행순서 및 유의사항

□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포(감사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및 감사일정 상정
-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 등에 관한 사전 안내
- 피감사기관장 등 증인선서 및 서명(전체 증인 기립 및 선서)
-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현황 보고·청취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질의 및 답변
 - 서류검증, 증언청취, 참고인 진술, 현지확인(필요시)
 - ※ 감사가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경우 : 당일감사 중지 후 다음날 속개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45, 조례 §4)
 -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시행령 §46, 조례 §13)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상의 주의의무 (시행령 §47, 조례 §14)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 감사공개원칙 (시행령 §48)
 - 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음

8. 행정사항

- 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서 제출 : 10. 31(목)까지
 - 피감사기관은 서류(자료)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한 주요업무보고서를 '13. 10. 31.까지 50부 제출(규칙 §12)
 - 감사자료 작성은 별도로 기간명시가 없는 경우 '12. 11. 1. ~ '13. 10. 20.까지 처리상황을 작성
 - 감사시작 전까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증인·참고인이 변경되는 경우(직위나 성명 등이 상이한 경우 포함)에는 감사일 현재 직위자로 자동 변경되며, 별도로 변경 통보나 출석요구는 하지 않음
 - 각 위원회별로 사정에 따라 요구자료가 추가되거나 감사일정, 대상기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일정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규칙 §10)

-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의결 및 제출 : 11. 29(금)까지
 -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가 아닌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결과 보고서 채택(규칙 §19)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조례 §15)

-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 12. 16(월)
 - 결과보고서 일괄상정 → 위원회별 제안설명 → 승인(조례 §15, §16)

□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집행기관 이송 : 12. 17(화)까지

- 지적사항 처리결과 2회 이상 보고 요구(조례 §16, 규칙 §19)

□ 과태료 부과 및 위증자 고발 : 12. 31(화)까지

- 서류제출, 선서 및 출석요구 불응자 과태료 부과(조례 §17, 규칙 §21)
 - 소관 위원장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요구
 - 의장은 시장이나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대상자 이첩 통보
- 위증자 고발(조례 §18, 규칙 §21)
 - 소관 위원회 요구 → 본회의 의결 → 증거자료 조사나 재판에 참여하는 공무원 지정 → 고발장 작성(의장 명의) → 지방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부 록

소관 위원회별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보고 요구서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 소관부서(기관)별 자료제출 요구서

“별 첨”